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해 사업 본격 추진한다

-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5월 16일(금) 오전 10시, 한국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 [4.14일 보도참고자료]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위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모집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우려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 또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56인을 선정·위촉하였다. 이 날 위촉된 대변인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환자대변인의 전문조력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하며,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 개요
- 2.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권민정 (044-202-2470)
	의료기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수영 (044-202-2474)

□ **행사 개요**

- (목적)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 추진을 위한 대변인 위촉
- (일시) '25. 5. 16.(금) 10시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 (참석)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 환자대변인 56명 등
- (내용) 인사말씀, 축사, 환자대변인 위촉장 수여, 사전안내 및 교육 등

□ **세부 일정**

시 간(소요)		식 순	비 고
10:00~10:40	40분	사전안내 및 제도소개 등	-
10:40~10:45	5분	위촉식 개회	-
10:45~10:50	5분	인 사 말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장
10:50~10:55	5분	축 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10:55~11:30	35분	위촉식 및 사진촬영	

* 이후 별도 교육 및 오찬 등 실시

- (개요) 의료분쟁 감정·조정 등 과정에서 조정 등에 참여하는 당사자에 조력자(변호사)를 지원해 법적·의학적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중대한 의료사고인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당사자(‘환자’ 및 ‘그 가족’)
 - * 중재사건의 경우 분쟁의 양 당사자(환자 및 그 가족, 보건의료인)
- (지원내용) 감정·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 및 자문, 자료제출 지원, 주요 쟁점·결과 검토 지원, 조정(준비)기일 시 의견제출 지원 등
- (지원절차) 지원대상자가 대변인 조력을 희망하는 경우 조정 신청 시 함께 신청 → 중재원 추천 및 매칭을 거쳐 대변인 선정 및 지원
- (대변인 운영)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중 대변인을 선발해 교육프로그램 이수, 윤리서약 등을 거쳐 운영
 - 50인 내외를 선발해 대변인 풀을 구성하고, 참여하는 건별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 (예산) '25년, 국비 3억원
- (운영방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탁 수행

◆ 의료분쟁 조정이란?

- (개요) 의료사고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
- (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 → 의료사고 감정 → 조정 또는 합의
- (효력)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경상해 의료사고의 경우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특례 적용